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2207903 |
| 의 뢰 인 | 임오경 의원 |
| 회 답 일 | 2025. 2. 5. |
| 추계번호 | 25E0639 |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–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

## 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 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말로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1년 6년간 총 2,534억원(연평균 422억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|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누적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(안 제88조의5) | −282 | −507 | −507 | −507 | −507 | −225 | −2,534 | −422 |

# Ⅱ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
|---|---|---|
| 1 | 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 | ○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<br>–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(2026년부터 저율과세*)<br>* 2026년 5%, 2027년 이후 9%<br>– (개정안) 2030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(2031년부터 저율과세*)<br>* 2031년 5%, 2032년 이후 9% |

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추계여부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 | ○ | –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
❑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
○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
○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31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 1) 조세지출 실적

❑ 조합 등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실적은 2020~2024년 연평균 634억원 수준이며 연도별로 증감이 반복되는 추세

[표 2] 조합 등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|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[1)] | 연평균[2)]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조세감면액 | 492 | 491 | 611 | 868 | 709 | 789 |
| (증감률) | (△37.2) | (△0.2) | (24.4) | (42.1) | (△18.3) | |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2) 2023~2024년 평균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# 2) 추계 방법

❑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○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(789억원)을 기준으로 함

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
○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배당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30년 9%p, 2031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30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31년은 5%, 2032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3]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연도별 배당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|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2032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현행(A) | 5 | 9 | 9 | 9 | 9 | 9 | 9 |
| 개정안(B) | 0 | 0 | 0 | 0 | 0 | 5 | 9 |
| 소득세율 변동폭(B-A) | △5 | △9 | △9 | △9 | △9 | △4 | 0 |

○ 2023년~2024년 배당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789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56억원(789억원/14%)으로 볼 수 있음

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
○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3) 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말로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1년 6년간 총 2,534억원(연평균 422억원)으로 예상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|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누적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(안 제88조의5) | -282 | -507 | -507 | -507 | -507 | -225 | -2,534 | -422 |

# 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# Ⅴ. 작성자

❑ 성명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|
|---|---|---|
| 세제분석1과 | 박성은 | 박연서 |

❑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|---|---|
| 박성은 | 02-6788-4668 | ixsepark@assembly.go.kr |